

소년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소년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이 규칙에서 소년에 대한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의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함께 규율할 수 있도록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고, 소년 형사사건의 조사 위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3. 주요내용

- 이 규칙에서 소년 보호사건뿐 아니라 소년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도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
- 이 규칙의 체계를 「소년법」과 마찬가지로 제1장(총칙), 제2장(보호사건), 제3장(형사사건)으로 정비하고, 그에 맞추어 기존의 제2조부터 제54조까지를 제2장 각 절에 편입시킴
- 소년 형사사건의 신속한 공판기일 지정에 관하여 종래 「형사소송규칙」에서 규정하던 것을 이 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함(안 제55조)
- 「소년법」 제56조에 따른 조사관에 대한 소년 형사사건의 조사 위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함(안 제56조)

4. 소년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소년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소년심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년 보호사건의”를 “소년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의”로 한다.

제2조 앞에 “제2장 보호사건 제1절 통칙”을 삽입한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조사와 심리

제3장의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절 보호처분

제4장의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절 항고

제5장의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절 과태료

제3장(제55조부터 제5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형사사건

제55조(공판기일 지정) 재판장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최대한 빨리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6조(조사의 위촉) ①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위촉할 수 있다.

1. 소년의 심신상태,品行,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2. 소년과 보호자의 관계,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보호감독상황 및 향후 보호능력
3.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과 정도
4. 그 밖에 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위촉에 따른 조사관의 조사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형사소송규칙」,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① 「형사소송규칙」 제179조를 삭제한다.
- ②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3조를 삭제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년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u>소년 보호사건의</u>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소년</u> <u>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의</u> ----- -----.
<u><신 설></u>	<u>제2장 보호사건</u>
제2조(결정서)	<u>제1절 통칙</u>
:	(현행과 같음)
:	:
<u>제2장 조사와 심리</u>	<u>제2절</u> -----
:	:
<u>제3장 보호처분</u>	<u>제3절</u> -----
:	:
<u>제4장 항고</u>	<u>제4절</u> -----
:	:
<u>제5장 과태료</u>	<u>제5절</u> -----
:	:
<u><신 설></u>	<u>제3장 형사사건</u>
<u><신 설></u>	<u>제55조(공판기일 지정) 재판장은 소년에</u> <u>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u> <u>면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최대한 빨리</u> <u>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u>

<신 설>

제56조(조사의 위촉) ①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위촉할 수 있다.

1. 소년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 상황, 그 밖의 환경

2. 소년과 보호자의 관계,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보호감독상황 및 향후 보호 능력

3.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과 정도

4. 그 밖에 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위촉에 따른 조사관의 조사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609